

의안번호	제 95 호
의 결 연 월 일	2007. 3. . ( 제 258회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제 출 자	행정자치위원장
제출연월일	2007. 3. 20.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95
----------	----

제안년월일 : 2007년 3월 20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주 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바임.

## 2. 제안이유

가. 일부 수도권의 위정자(爲政者)들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채,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나. 지방의 자생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동시에,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의회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시하기 위함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님께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을 계기로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 위정자(爲政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의 수도권 郡지역 배제 요구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을 붕괴시켜 국토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위가치를 도외시한 채,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 자연보전권역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현재 공장은 물론 주택·관광지·학교·공공청사 등 인구 집중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과밀방지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 등 각종 오염원의 신·증설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역인 동시에, 수도권 규제시책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의 주장대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의 훼손은 불가피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후진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64년 이후 추진되어 온 수도권 규제시책은 그동안 수도권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거대한 수도권이 형성된 반면, 지방은 인구 및 자본 유출과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 등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수도권 위정자(爲政者)의 주장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믿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수도권에는 첨단 우량기업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에는 부실기업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유발시켜 지방경제는 자생적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및 자본유출 등 희생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더 이상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구하는 「상생하는 균형국토 실현」을 위해,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특화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내 기업 및 인구를 수용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기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 3. 20.

**忠淸北道議會 議員 一同**